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3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3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 2005년 1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전담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설치됨에 따라 민방위 관련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민봉사과 민방위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함에 따라 구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함.(안 별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p>	<p>○ 네, 그렇습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3호
의결 년월일	2005.3.24 (제118회)

제출년월일 : 2005. 3. 1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2005년 1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전담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설치됨에 따라 민방위 관련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민봉사과 민방위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함에 따라 구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함.(안 별표)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사무위임조례”를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별표 제1호중 시민봉사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의 하수과란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적용	수임 기관
재난안전 관리과	1.민방위 기술지원대	가.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3	구청장
	2.민방위대 정기검열	가. 민방위대 정기검열(미위임 직장대 및 지역대 단, 민방위 대원 150인 이상 직장대는 제외)	·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3.민방위 교육훈련	가.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 동법 제34조제2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부천시사무위임조례</u>	<u>부천시 사무위임 조례</u>

